

장애인 소년보호사건 사법지원 방안 연구*

김예원**·한민희***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이 장애인인 경우 사법지원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현행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장애인 관련 사법지원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이 장애인일 경우 수사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장애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법제도 안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이 장애인일 경우 고려되는 사법지원 및 정당한 편의는 충분한가?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호소년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 유형과 특성 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 및 재판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제도 및 법령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만으로는 소년보호사건의 장애인 보호소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장애인 소년보호사건에 필요한 사법지원 방안 및 제도 개선점에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소년보호사건, 장애인, 보호소년, 사법지원

* 이 논문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 변호사,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I. 서론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어느 시대에도 있어 왔다. 최근 소년범의 재범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특성이 저연령화, 흉포화, 지능화 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심각해져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년범죄 문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소년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사법 제도는 일반 형사법상 사법제도와 조금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소년범죄의 가해자인 장애인에게 적절한 사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소년범죄에 있어서의 장애인 사법지원 각 절차상 도출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인식을 기초로 우선, 장애인과 장애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를 분석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의 제도적 특성과 절차를 알아보고 장애인이 소년범죄의 가해자로서 소년보호재판 을 받게 될 때 각 절차별로 개선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장애의 개념 및 원인, 유형 등을 통계와 함께 살펴봄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개관한다. 또한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 현황을 살펴본다.
- 현행 장애인 사법지원제도를 살펴본다 소년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분석해 본다.
- 소년사건의 이원화제도를 소개하고 소년보호제도의 목적을 알아본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소년형사사건과 비교해 봄으로서 연구의 범위가 소년보호사건임을 구체화한다.
-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서 각 절차별로 장애인이 재판의 당

사자가 될 경우 어떠한 사법지원이 필요할지 제시한다.

-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소년범과 장애인 인권의 교차점으로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이 장애인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 제도개선의 구체적 과제로서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 재판단계에서, 이후 단계 등에서 나타나는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II. 장애인 이해 및 장애인 사법지원제도

1. 장애와 장애인 이해

가. 장애의 개념 및 원인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을 규정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 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15가지 유형의 장애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애종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겉으로 보이는 외부신체적 기능장애와 내부신체적 기능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적 기능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신체적 기능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는 절단 및 변형 장애가 대표적이고, 뇌병변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장애이다. 시각장애는 시력이나 시야가 결손된 장애이고, 청각장애는 청력이

나 평행기능의 장애이다. 언어장애는 언어나 음성, 구어의 장애이고,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지수가 70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자폐성장애에는 자폐스펙트럼 내의 다양한 자폐성 장애가 있으며, 정신장애는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나뉜다. 신장장애는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이고, 심장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상태이다. 호흡기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능 이상이고, 간장애인은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이다. 안면장애는 얼굴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이며, 장루요루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장루와 요루를 말한다. 뇌전증장애는 기존 간질장애의 새로운 용어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4.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5.39%(267만 명)로, 인구 1만 명당 53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5만 여 명으로 2017년 조사결과인 267만 명 중 12만 명(4.5%)은 미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4년도 장애출현율 5.59%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한 것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장애등록 연계 서비스 내용 확대 등에 기인하여 비교적 높은 장애 등록률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 장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은 255만 명가량이고,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이 등록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1,254,000 명)이고, 그 다음은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뇌병변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등록 장애인은 안면장애인이다.

장애발생의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 88.1%로 2014년 88.9%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후천적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은 56.0%이고, 그 다음 원인은 ‘사고’로 32.1%로 나타났다. 선천적 원인은 5.1%, 출산시 원인은 1.4%, 기타 원인불명은 5.4%로 조사된 바 있다.

나.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 및 인권관련 법령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기본권의 각 영역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지만, 최근 시행된 「장

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같이 특정 기본권을 위한 법률도 제정되고 있다.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법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등의 복지적 서비스 지원 제공을 위해 제정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도 장애인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장애인 관련 법령 중 특히 인권에 관련된 법률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을 들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8년 4월 10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정서적 학대, 방임 및 유기,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 등을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 욕구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한 목적으로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욕구 파악을 통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장애인 인식교육 실행 및 수사 시 신뢰관계인 참석 등 형사사법절차 상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현장조사 규정, 위기발달 장애인쉼터 등 보호조치 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역할,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도 마련해 두고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제도

장애인인 보호소년 관련 제도의 개선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마련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제도의 개관을 살펴본다.

가. 장애인 사법지원 일반

1) 헌법상 장애인 사법지원

장애인이 재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지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보장에 해당한다.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 장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는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에 해당한다.

장애인이 민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형사소송의 피고인 등의 지위가 아니라,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 법원 직원과 같이 국가기관의 구성원 지위에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의 공직 수행을 위한 각종 조치 및 지원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이 그 근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은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에 있어 거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한 준거 규범으로 작용한다. 헌법상 평등권은 서로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취급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것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금지하므로,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 소송법상 장애인 사법지원

민사소송법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제62조). 또한 제143조(통역) 제1항 본문과 형사소송법 제181조(농아자의 통역)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위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단서는 속기사 등을 통한 문자통역의 근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또한,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을 받는 피의자(제244조의5), 공판에서 신문을 받는 피고인(제276조의2) 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55조 제2항의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문맹인 외에도 시각장애나 난독증이 있는 장애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단서의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과 지체장애·뇌병변장애 등으로 글씨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나. 특수한 경우의 장애인 사법지원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직접차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차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도 포함된다(제4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제4조 제2항)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제1항) 외에,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제4항),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제5항) 및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표현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사법기관의 의무(제6항) 등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이를 열거적인 편의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며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장애 유형·정도 및 구체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더욱 다양한 내용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또한,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0조 제1항), 장애인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수단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

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웹사이트 뿐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용 웹사이트에도 동일한 수준의 웹접근성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큰 설득을 얻고 있다. 가령, 형사사법포털(KICS)을 웹사이트로 접속해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이용하는 것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이외에도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은“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법원이 재판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구축·관리하는 경우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법지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내용은 동법 제276조의 2에 의하여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도 재판장 또는 법관의 피고인신문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임의적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발달 장애인(지적장애, 자폐장애)을 위한 보조인 및 전담조사제도를 규정(동법 제12조 제2항, 제3항 및 13조 제1항)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통역제공 규정도 형사소송법 제181조,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55조, 장애인인권옹호추진방안에 관한 지시 제3항 등에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1170호) 제37조(가족 등의 참관)

는 ‘검사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참관의 의미는 변호인의 참여와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조사받는 자의 심신안정을 위해 조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염두한 조문으로 해석된다.

동 훈령 제53조(소년)에서는 ‘검사는 소년(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소년의 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하여 동 훈령 제55조에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비단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뇌병변장애나 청각장애로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경우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란 가족, 활동지원사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연구에서 자세히 검토하고자 하는 ‘소년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소년재판을 받는 장애인의 보호처분 절차상 개선사항을 제언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년보호사건을 개괄한다.

III. 소년법과 소년보호사건의 이해

1. 소년보호사건의 이해

가. 소년사건의 이원화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이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① 소년보호사건과 ② 소년형사사건을 구분하여 소년사건을 이원화하고 있다.

소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검찰·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연령·범죄의 내용과 죄질·이전 범행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룰지 소년형사사건으로 다룰지’ 결정한다.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이 장애인인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소년보호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인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소년법 제2조), 범죄 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으로 구별하고, 이들을 합하여 ‘비행소년’이라고 지칭한다.

①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이고,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 보호처분시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 소년이다.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벌이 적절할 경우 소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조). ②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조). ③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중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다. 소년형사사건과 비교

소년법은 소년형사사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년사건을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소년법 제48조). 즉 소년법의 취지를 형사사건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심리방침과 형벌 등에 별도의 규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소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2. 소년보호재판의 절차¹⁾

가. 가정법원에 사건접수(송치 또는 통고)

① 범죄소년의 경우, (i)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거나 (ii) 소년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소년형사부가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법 제50조). 그리고 보호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② 촉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거나(소년법 제4조 제2항), 범죄소년과 같이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③ 우범소년의 경우, 촉범소년과 같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제3항).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바로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점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는 일반 형사사건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다.

나. 신병에 관한 처리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①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②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소년

1) 강동욱,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3호, 2012년, 13-24쪽

법 제18조 제1항). 이중 ③에 대해 임시위탁이라고 칭한다. 임시조치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다. 조사절차

조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으나 심리개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 보호처분을 위해 필요하다. 조사절차는 ① 법원의 조사절차(조사관 조사, 전문가 진단, 심리상담조사, 시험관찰, 청소년참여법정 등)와 ② 법원 외의 조사절차(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등)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내린다.²⁾

라. 심리

소년부 판사는 조사결과를 포함한 기록을 검토한 후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개시결정을 하고 심리를 시작한다. 이때 소년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소년법 제17조 제1항),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소년법 제1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소년법 제17조 제6항).

그런데 소년이 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②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i)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ii)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iii) 그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보조인을 국선보조인이라고 한다.³⁾

2) 이상한, “소년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2016년, 130-137쪽

3) 원혜옥,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2016년, 17-30쪽

마. 보호처분의 결정

1) 불처분결정

소년부 판사는 ① 소년의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비행사실이 인정되나,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강하고, 비행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다른 비행으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어 새로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다.

2) 검사에게 송치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부 판사는 ① 사실관계를 다투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한다. 그리고 ② 소년을 조사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7조 제1항). 또한 ③ 소년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그러하다(소년법 제7조 제2항). 다만 위 소년이 법원에서 송치된 경우라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소년법 제7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3)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그리고 보호처분은 처분 상호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또한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이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그 내용

종류	내용	기간(연장)	적용연령	병합가능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월(+6월)	10세 이상	2, 3, 4, 5호
2호	수감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1, 3, 4, 5호
3호	사회봉사명령	20시간 이내	14세 이상	1, 2, 4, 5호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1, 2, 3, 6호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2년(+1년)	10세 이상	1, 2, 3, 6, 8호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월(+6월)	10세 이상	4, 5호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월(+6월)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월 이내	10세 이상	5호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바. 항고

소년·보호자·보호인·그 법정대리인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결정에 대하여 ①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②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할 수 있다.

사. 기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을 소년형사사건과는 달리 특별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보호사건 특유의 재량성과 내밀성, 대외비성은 소년범죄에 대한 법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소년보호사건의 특별한 처리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피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제도개선 방향 및 향후 과제

1. 소년법과 장애인 인권 교차점

소년법이 소년보호사건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소년이 장애인인 경우,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년법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보호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외에 별도로 장애인 보호소년에 대해 규정한 것은 없다.

소년보호사건이 가정법원에 접수되면 심리전·후로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보호소년이 장애인이면 전문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 등에 의한 전문가 진단이나 심리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호조치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관상 보호소년의 장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장애인 보호소년을 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특히 보호자가 소년보호재판 전 보호소년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해한 후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장애를 진단받고 등록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경계성 장애가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2. 수사단계에서 개선방향

앞서 거론한 것처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를 거친다. 이때 범죄행위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사건의 실체와 적정한 책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장애인이 당사자인 소년보호사건의 사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사자에 대한 장애여부 확인과 특별한 조사절차가 필연적이다.

대법원은 “소년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까지 종합해 본 다음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⁴⁾.”고

판시한 바,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의 심신미약 등 정신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 수사초기 단계부터 장애여부 및 소년상태 확인 의무제도

경찰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 소년업무규칙⁵⁾에 따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고(제17조), 조사할 때 언행이나 태도에 특별히 주의하고(제18조), 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조사 시 전문가를 참여시킨다(제23조). 이때 참여한 전문가는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제25조). 그런데 소년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마약사용·정신상태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을 뿐 장애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같은 취지로 보호소년의 장애여부에 대하여는 형사사법포털(KICS)에 피의자등란을 입력하면서 필수적으로 이를 기재토록 함으로서 해당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사법지원이나 정당한 편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장애인 보호소년에 대한 전담조사제

보호소년은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자료 일체를 토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할지 소년형사사건으로 할지 결정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경우 송치서에 보호소년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처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그런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니어서 검찰수사를 받지 않는 만큼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보호사건송치서에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도 기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찰 초기 수사과정에서 보호소년의 장애유무를 신중히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3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5) 경찰청예규 제537호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및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며⁶⁾ 현재 시행중이다. 이 제도로 인해 조사를 받는 보호소년이 ‘발달장애인’일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아닌 기타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위한 수사절차상 지원제도는 통역이나 신뢰관계인 등 형식적인 의사소통 지원 관련 제도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 보호소년이 장애인인 소년사건은 장애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소년사건의 절차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 조사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조사는 문답을 바탕으로 조서에 기재되는데,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단순히 청력이 부족한 경우보다 그로 인한 문법체계 자체의 미숙함 등의 취약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사기관 내 장애인 소년 전담조사제도가 필요하다.⁷⁾ 그리고 보호소년이 장애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참여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지능과 사회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심리평가를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다. 장애인 보호소년 조사 시 보호자 및 신뢰관계인 적극 참여

소년업무규칙은 ‘경찰관이 보호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 하여야 하고,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2013년 8월 서울 모 경찰서에서 있었던 유사사건(지적장애 2급 소년을 절도사건 조사를 이유로 심야에 연행해 밤새 수갑을 채우고 보호자 동석을 배제한 채 수사하여 기소유예)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9. 선고 2015가단 5321684판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소년이 장애인임이 확인된다면 보호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보호자 등 소년의 진술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공적

6) 발달장애인법 제13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 조사제

7) 최병각, “소년사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2016년, 111-112쪽

인 역할을 하는 제3자(가령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직원 등)를 장애인 보호소년의 임시 보호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3. 소년보호재판단계에서 개선방향

가. 장애인 보호소년에 대한 필수적 보조인 선임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면 심리개시 전에도 법원 및 법원 외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보호소년과 달리, 장애인 보호소년은 조사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경계성 장애에 있는 보호소년의 경우 전문가가 조사하여야 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소년이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보이는 경우, 필수적으로 보조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 보호소년에 대한 임시처분 프로그램 개선

앞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임시위탁 중에도 보호소년에 대한 여러 조사 등이 행해진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장애인 보호소년의 상황에 맞는 별도의 위탁교육 및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보호소년은 다른 보호소년들과 같은 호실에서 지내는데, 소년분류심사원의 특성상 같은 호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 방에 있는 보호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위탁교육과 조사 및 호실배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이 보호소년의 처우지침 및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소년부에 통보하는 분류심사보고서에 장애여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기타 소년보호사건 개선방향 등

가. 보호처분 집행 단계에서 개선방향

장애인 보호소년을 고려한 양질의 보호처분이 집행된다면, 장애인 보호소년의 재

범이 방지되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을 받은 장애인 보호소년의 경우, 친부모 등 보호자가 위탁받은 경우에도 보호소년을 적절하게 감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위탁할 보호자가 마땅치 않을 경우 신병인수 보호자위탁을 하여야 하는데, 장애인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형 그룹홈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면, 안정적인 감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호 및 제3호 처분의 경우, 장애인 보호소년이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수강프로그램과 사회봉사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호 및 제5호 처분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시 장애인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보호관찰카드에는 보호소년의 장애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고,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보호관찰소가 관할 소년부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할 경우, 어떠한 보호처분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의견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 보호소년이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그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병원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7호 처분이 집행되는데, 현재 제7호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제7호 시설의 경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전소년원 외에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어, 경제력이 어려운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보호소년의 위탁을 포기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소년의 치료와 상담을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제6호 및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8호·제9호·제10호 처분의 경우, 장애인 보호소년의 수준과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타 제도개선 사항

경제성 장애인 보호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장애인 보호소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리고 국선보조인 또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활동가 등을 장애인 보호소년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소년법의 목적(제1조)은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을 다른 재판을 구분하는 지표이고,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구별하는 근거이다. 소년보호사건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소년형사사건과 구별된다. 즉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훈육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각별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보호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각자에 맞는 보호처분을 해야 하고, 보호소년이 장애인일 경우 적법절차의 보장은 물론 그에 맞는 보호처분이 시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소년사건에 대한 사법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소년법의 목적과 소년보호사건의 실질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가사법특별연수(제187기), 2016
- 법원행정처, 소년 실무제요, 2014
-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2013
- 강동욱, 대한민국 및 미국 영국 뉴질랜드 영국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3호, 2012
- 원혜옥,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2016
- 이상한, “소년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2016
- 최병각, “소년사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2016

A Study of Schemes to Improve Juvenile Protec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Kim, Ye-won*·Han, Min-hee**

Focusing on the fact that legal support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are not properly provided to protected juveniles with disabilitie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this research summarized the types of legal support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that can be provided to the juvenile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two main issues to be dealt with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ies that should be particularly noted in investigation process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Second, are juveniles with disabilitie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provided with sufficient legal support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under the present legal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juveniles with disabilities in protected juvenile cases to have new investigation and trial system that comprehensively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ies but also the specificity of the legal procedures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Second, the current judicial support system and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that are provided to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protect the protected juveniles with disabilitie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so that significant improvement is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researchers of this study present several new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upport system for juveniles with disabilitie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 Lawyer, Disability Rights Advocate Center

** Lawyer, Han Min-hee Law Office

❖ Key words: Juvenile Protection Cases, Protected Juveniles, Legal Support,
Juveniles with disab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